

2026. 10.

## 영국 법원, 상세페이지 광고사진에 대한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부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준우

### 1. 사건 개요

- 원고: 1) Roadget Business Pte Ltd, 2) Shein Distribution UK Ltd
- 피고: Whaleco UK Ltd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다국적 기업집단에 속하며 패션 소매업 분야 경쟁자들이다. 원고 Roadget Business의 자회사인 원고 Shein Distribution UK는 SHEIN 브랜드로 사업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데, 영국 shein.co.uk를 운영했다(이하 '원고'). 피고 Whaleco UK Ltd는 TEMU 브랜드로 사업하는 PDD Holdings 기업집단에 속하며, 영국에서 Temu 플랫폼을 운영했다(이하 '테무'). 피고 테무는 원고와 달리 플랫폼에서 자기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의 플랫폼에 입점한 일부 판매자들이 원고의 웹사이트 의류 상품 광고사진을 복제하여 이용하였고, 원고들은 이 중 2,559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Guangzhou Shein 직원이 촬영한 사진 4개 및 공급업체 Jiameiluo가 제공한 'Strawberry Nightdress' 사진(이하 '딸기 잠옷 사진') 1개만 심리대상이 되었다.

법원은 딸기 잠옷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이 원고에게 양도되기 전 사진작가가 이용을 허락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진 4개에 대해 복제권과 공중전달권 침해인지, 간접침해(secondary infringement)인지를 판단했는데, 모두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sup>1)</sup> 다음에서 영국 저작권법 주요 쟁점별 법원의 판결 및 판결이유를 소개한다. (네모 괄호 '[' ]'안 숫자는 판결문 해당 부분 '단락 번호'임.)

### 2. 쟁점별 판단

#### 1) 피고가 이용자의 일시적 복제를 허락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 비침해

원고는 이용자가 피고 사이트의 상품 사진을 열람하면 사진이 컴퓨터·휴대전화 등의 RAM

1) Roadget Business Pte Ltd v Whaleco UK Ltd [2026] EWHC 2165 (Ch) (Case No: IL-2023-000132).

등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므로, 피고가 그러한 복제를 ‘허락’함으로써 제17조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223] 법원은 직접적인 이용 증거는 없지만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이 실제로 일부 영국 이용자에게 열람되었다고 추론(infer)하였다. [225-226] 그러나 그러한 웹 브라우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에는 제28A조<sup>2)</sup> 일시적 복제 예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239]

특히 원고는 사진이 상품 구매 결정을 유도하여 경제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제28A조의 ‘독립된 경제적 중요성이 없을 것(no independent economic significance)’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32]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판단 대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는 웹사이트 운영자인 피고가 아니라 일시적 복제를 하는 이용자다. 이용자가 상품 사진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함은 오프라인 매장 진열 상품을 봄과 같으며, 일시적 복제 그 자체를 경제적으로 이용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233-234] 따라서 제28A조가 적용되고 이용자가 복제권 침해를 안 했으므로 피고의 침해 허락도 성립할 수 없다.

법원은 나아가 만약 이용자의 복제가 침해라도 피고가 이를 허락(authorise)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저작권 침해의 허락은 단순히 침해를 가능하게 함(enablement)이나 조력함(assistance)을 넘어 침해행위를 승인·인가함을 필요로 한다. [241] 피고는 판매자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침해 콘텐츠의 업로드를 조장·승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으로 이를 금지하며 권리자의 신고 및 삭제 절차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의 침해를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47]

## 2) 피고가 원고의 공중전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 비침해

법원은 피고가 사진을 공중에게 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하였다는 주장도 배척하였다(제20조).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관한 플랫폼 운영자 책임은 단순히 침해 콘텐츠의 업로드·접근 수단을 제공하고, 플랫폼에 일부 침해 콘텐츠가 존재함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음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CJEU(EU 사법재판소)의 GS Media, Filmspeler, Ziggo 및 Peterson 등 판례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자가 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입(de-liberate intervention)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56-277]

피고가 일부 판매자 사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침해 이미지의 업로드를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하거나 이를 장려·홍보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판매자의 침해 콘텐츠 업로드를 계약으로 금지하고 신고·삭제 절차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 행위는 저작물 접근 제공을 위한 고의적 개입이 아니므로 제20조의 공중 전달이 성립하지 않는다. [278]

2)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s 28A. "Copyright in a literary work, other than a computer program or a database, or in a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the typographical arrangement of a published edition, a sound recording or a film, is not infringed by the making of a temporary copy which is transient or incidental, which is an integral and essential part of a technological process and the sole purpose of which is to enable — (a) a transmission of the work in a network between third parties by an intermediary; or (b) a lawful use of the work; and which has no independent economic significance."

### 3) 피고 행위가 침해로 보는 전시·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침해

제23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secondary infringement)가 성립하려면 피고가 해당 물건이 침해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믿을만한 이유(reason to believe)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플랫폼에 침해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저작물이 침해물이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알아야 하며, 통지받은 후에도 합리적인 조사 기간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282-283]

피고는 2023년 9월 법원 명령에 따라 통지받은 표본 상품목록을 2 영업일 내에 삭제하였는데, 법원은 이 기간이 원고의 저작권 귀속과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에도 부족했다고 보았다. [287] 특히 원고가 2023년 6월 보낸 사전통지에는 무려 8,036개의 상품목록이 포함되어 있었고 다수의 링크가 잘못되어 있었으며, 원고 자신조차 당시 일부 사진의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공급업체 사진의 권리 귀속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288-289]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해당 사진이 침해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었고 제23조 침해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297]

### 4)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 인정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23년 9월과 2024년 2월 가처분 명령(interim injunction order)을 받으며 제공한 손해배상 확약(cross-undertakings in damages)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44] 법원은 해당 명령들이 피고의 상품목록 삭제로 인한 손실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원인(dominant and effective cause)이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플랫폼에서는 사진 없이 상품을 게시할 수 없었으므로 사진 삭제는 사실상 상품목록 삭제를 의미했고, 이는 원고도 예상할 수 있었다. [351] 피고가 판매자에게 대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이의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 경감(mitigation)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355]

## 3. 결론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불법 게재 사진에 대한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책임이 쉽게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첫째, 이용자의 상품 사진의 열람으로 인한 RAM 등의 일시적 복제는 그 열람이 상품 구매라는 경제적 목적과 관련 있어도, 일시적 복제 자체가 별도로 경제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므로 제28A조 일시적 복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플랫폼이 이용자의 복제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복제행위 허락(authorise)이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공중전달과 2차적 침해(간접침해)에서도 플랫폼의 일반적 침해가능성 인식과 특정 침해 인식이 구별된다. 플랫폼의 공중전달권 침해는 플랫폼에 침해물 존재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플랫폼이 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저작물 접근 제공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가 중요하다. 제23조 2차적 침해(한국 저작권법의 침해로 보는 행위와 유사함) 역시 특정 저작물이 침해물임을

알았거나 믿을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권리자 통지만으로 이 요건이 즉시 충족되지 않고, 합리적인 조사 기간이 인정된다.

셋째, 권리자가 플랫폼에 상품 사진 삭제를 요구할 때, 침해 주장뿐만 아니라 저작권 귀속과 침해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SHEIN 자신도 일부 사진의 저작권 귀속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으로 삭제를 요청했다는 점과 피고 플랫폼 Temu가 이를 조사하기 전에 상품목록을 삭제했다는 점이 법원의 2차적 침해책임 부인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가처분명령을 이용한 대량 삭제 요구에는 역으로 상당한 위험이 따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안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자 피고 플랫폼 Temu는 가처분명령에 제공된 손해배상 확약에 기초한 반소에서 승소하였고, 손해액은 후속 재판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이는 플랫폼을 상대로 한 신속한 권리구제에서 권리자의 권리귀속 및 침해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 참고 자료

---

- Roadget Business Pte Ltd v Whaleco UK Ltd [2026] EWHC 2165 (Ch). [https://www.judiciary.uk/judgments/roadget-business-pte-ltd-v-whaleco-uk-limited/?utm\\_source=chatgpt.com](https://www.judiciary.uk/judgments/roadget-business-pte-ltd-v-whaleco-uk-limited/?utm_source=chatgpt.com)